

광주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4가단5169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어선목록 기재 어선에 관한 2021. 8. 18.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에게 별지 어선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보성군 2021. 8. 18.등록 저당권(채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액 30,000,000원) 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개인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개인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B은, 광주지방법원 2023개회523321 개인회생 사건에서 2023. 12. 1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 법원의 속행명령에 따라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변론종결일까지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김정철

별지